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

The Chinese Government Strategy on Deepening Population Aging

김 병 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Byung-Cheol Kim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Renmin University of China

(초록)

본고는 중국의 인구고령화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을 살펴본 글이다. 중국은 2015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47%를 차지했으며, 2027년에는 14%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인구고령화 속도 및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한 국가적 고민은 중장기 발전계획 변화의 움직임에서 드러나고 있다. 제10차 5개년 계획 요강에 인구고령화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되면서 인구고령화 대응의 서막을 알린 이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절로 등장했고,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 인구고령화 절의 설명이 상세해졌으며, 또 제13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절에서 장으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중장기 발전계획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인구고령화 대응방안도 ‘일반적→구체적→연계적’ 대응단계로 발전해오고 있다.

주제어 : 중국의 고령화, 인구고령화, 고령화 대응전략, 고령화 발전계획

(Abstract)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tatus quo of China's population aging and the governmental strategy on deepening population aging. Around the end of 2015,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was approximately 10.47% of the total population in China, but is expected to reach 14% of the aged society by 2027.

* 교신저자, Dr. Byung-Cheol Kim,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School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Renmin University of China, 59 Zhongguancun Ave. Beijing, 100872 CHINA (e-mail: bemastered@naver.com).

China is likely to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deepening population aging, boosted by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aging and vast population. Indeed, the national agony of population aging has been revealed in the move of the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term population aging was firstly mentioned in the 10th five-year plan while marking the beginning of population aging prevention strategy. Later, population aging appeared as an independent clause in the 11th five-year plan, population aging was in more detail explained in the 12th five-year plan, and population aging was developed from the clause to the chapter in the 13th five-year plan. As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ing becomes larger in the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to cope with population aging has also evolved into a stage of ‘general→detailed→connective’ response.

Key words : Population aging, Coping strategy of aging population, National development plan of aging population

I. 서 론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¹⁾사회 건설의 완성을 앞두고, 2017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两会)²⁾에서는 민생보장과 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의 완성 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회에서는 올 한해 민생 보장·안정을 위해 빈곤 탈출, 의료 개혁, 양로(養老, 요양)제도 구축, 환경 보호, 판자촌

개발, 호적제도, 통신료 인하, 온라인 쇼핑 반품 등 8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구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노인의 양로·의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정부는 제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計劃綱要, 2016-2020년, 이하 “13.5 계획 요강”으로 칭함)의 발표 이후 민정사업 발전 13.5 계획(民政事業發展十一個五年規劃, 2006-2010년), 13.5계획 중국 노령사업 발전 및 양로체계 구축 계획(“十三五”國家老齡產業發展和養老體系建設規劃, 2006-2010년), 그리고 국가 인구발전 계획(國家人口發展規劃, 2016-2030) 등을 연이어 발표해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처한 인구고령화의 딜레마는 근자에 ‘중국이 부강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렸다(未富先老).’는 어구로 표현되

- 1) ‘샤오캉’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즉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함. 이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재위: 1990. 4. - 2005. 5.)이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말한 이후 중국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됨.
- 2) 양회는 국정자문회의 성격을 지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와 국회성격을 지닌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를 통칭함.

고 있다. 중국은 1인당 GDP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이나 물질적, 시간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부강해지기 전에 늘어가는 중국이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인구고령화의 현 주소 및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인구고령화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구고령화의 심화

인구고령화는 한 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³⁾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그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일 때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 개념을 적용한다면, 중국은 2015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47%를 차지했기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7년이 되면 14%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는 인구고령화 속도와 방대한 인구에 의한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인구수 및 인구구성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다. 전체인구는 2015년 말 이미 13억 7,462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80만 명이 늘어났다. 그중 남성은 7억 41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1.2%를 차지하며, 여성은 6억 7,048만 명으로 48.8%이었다. 남성의 인구가 더 많은 것은 출생 시 성비(性比)⁴⁾와 관련되는데, 2015년도의 출생 인구의 성비는 113.51:100으로 2014년에 비해 2.37이 감소했다.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미래 경제활동인구(0-15세 인구) 및 현재 경제활동인구(16-59세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0-15세 인구는 2억 4,16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7.6% 그리고 16-59세 인구는 9억 1,09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66.3%이었던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2,2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1%를 차지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7.2%, 66.8%, 16.0%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

3) 비록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에는 퇴직 연령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의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인권익보장법’ 제2조에 따라 60세 이상의 국민을 의미함.

4)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즉 성비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인구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상회하고, 100 이하일 경우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상회함을 의미함.

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경제활동인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부양책임과 자신의 노후 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철, 2016).

2. 인구고령화의 현황

중국은 인구대국이자 노인대국이기도 한다. 중국의 통계연감에 의하면,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5%로 그 수가 무려 1억 4,386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노인인구의 약 22%이자 아시아 노인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한편 중국의 노인인구는 주로 60-69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60대의 비율은 56.1%, 70대의 비율은 30.0, 그리고 80대 이상의 비율은 13.9%에 해당되었다.

중국 인구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심각한 정도로 빠른 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9년 총 8,67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6.9%에 불과했지만, 2001년 9,062만 명으로 7.1%, 2005년 1억 100만 명으로 7.7%, 2010년 1억 1,900만 명으로 8.9%, 그리고 2015년 1억 4,400만 명으로 10.47%를 차지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인구는 무려 5,695만 명이 증가했는데, 매년 평균 약 355만 9,40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3.21%의 증가율을 보였다.

3. 인구고령화의 미래 추세

중국 국무원(國務院)⁵⁾이 2017년 1월 25일 발표한 ‘국가 인구발전 계획(2016- 2030)’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향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인구발전 계획’은 인구와 관련된 국가의 장기계획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인구 전략방향 및 지침을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인구 및 출산조절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근거가 되며, 경제·사회발전의 거시적 정책결정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인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국가 인구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인구는 2030년 14.5억 명으로 최고치를 달한 후 감소세에 접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30년경에는 전체인구의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新华社, 2016). 앞으로 80세 이상 노인인구도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 전체인구의 1.85%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60년에는 12-13% 그리고 2100년에는 16-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 심화현상은 전체 사회의 노인 부양비를 증가시키고, 젊은 세대는 가중된 양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田雪原, 2014). 이와 함께 사업체와 근로자 본인의 사회보험 보험

5)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이자 중앙 인민정부임.

료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노동력 원가도 상승하게 된다. 사회복지지출에 쓰이는 재정도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사실상 현재 사업체의 사회보험 부담률이 높은 편이고 세금부담도 적지 않아서 보험료 비율의 상승과 세금 부담의 증가 공간은 매우 작다(韓鵬, 2015).

III. 중국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전략 변화

인구고령화 심화에 대한 고민은 중국 국가 정책 변화의 움직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5년마다 국가 중장기 발전목표·방향에 대한 기본 설계를 제시하는데, 5개년 계획들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0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요약”(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綱要, 2001-2005년, 이하 “10.5 계획 요약”이라 함)⁶⁾에서 인구고령화가 한 차례 거론되었고,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요약”(2006-2010년, 이하 “11.5 계획 요약”이라 함)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절로 등장하였으며, “제12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요약”(2011-2015년, 이하 “12.5 계획 요약”이라 함)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절로 등장하면서 각 절의 설명이 상세해지기 시작했으며, “제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요약”(2016-2020년)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절에서 장으로 승급되었다(문익준, 2016). 아래에서는 2001년부터 준비해 온 중국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전략을 시기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10.5 계획” 기간(2001-2005년): 인구고령화 용어의 최초 등장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재위: 1998. 3. - 2003. 3.)는 2001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9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005년까지의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가이드라인인 “10.5 계획 요약”을 발표했다. 요약의 요지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정책⁷⁾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WTO가입에 대비한 국유기업 등 각종 개혁의 완성과 대외 개방 확대, 빈부격차의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2005년까지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7%대로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에 의해 2010년 GDP규모를 2배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였다. 또한 중국의 최대 고민거리인 인구문제도 “10.5 계획”에 따라 인구 증가율을 0.9%로 억제해 인구도 2005년에는 13억 3,000만 명으로

6) 제11차(2006~2010년)부터는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計劃)’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침(guideline)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규획(規劃)’을 사용함.

7)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정책에 의해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목표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음.

억제시킬 계획이었다(國務院, 2001a).

인구고령화라는 용어는 “10.5 계획 요강”에서 처음 거론되었다. 물론 중국에서는 1999년 10월 국무원의 주관 하에 총 28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노령사업위원회 사무처(全國老齡工作委員會辦公室)’가 설립되어 인구고령화 사업발전 전략·정책을 추진하고 노인 권익보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문제를 정식으로 국가 발전계획에 포함시킨 시점은 바로 “10.5 계획 요강”부터였다. “10.5 계획 요강”은 총 20개의 편, 2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18장 ‘적극적 취업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수립’에서 주로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면서 ‘인구고령화 추세를 중시하면서 가정(재가)양로를 독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國務院, 2001a). 구체적으로 제18장은 ‘적극적 취업 확대(1절)’, ‘사회보험제도 완비(2절)’, 및 ‘기타 사회보장사업 발전(3절)’의 3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고령화는 3절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회 전체가 아닌 가정 양로(재가 요양)의 책임을 강조했다.

“10.5 계획”이 시작되는 2001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시대로 진입했는데, 이때부터 중국 정부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10.5 계획 요강” 발표 이후, 2001년 7월 22일 국무원에서는 기존의 “중국 노령사업 7년 발전 요강”(中國老齡產業七年發展綱要, 1994-2000년)을 새롭게 “중국 노령사업 발전 10.5 계획 요강”(中國老齡事業發展“十五”計劃綱要, 2001- 2005년)으로 개편했다(國務院, 2001b). 이는 중국정

부가 국가마스터플랜과 노령사업발전 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노령사업 발전을 도모한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노령사업 발전 10.5 계획 요강”의 실시 이후, 중국의 노령사업은 다음과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國務院, 2006a).

첫째, 기본적인 양로보장체계의 구축인데, 양로보험(노령연금)의 적용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기초 양로급여(노령연금급여)가 제때에 지급되었고 또 급여수준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기업 퇴직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다. 둘째, 도시에서 기본의료보험제도가 수립되고 또 농촌에서도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가 확대·실시되는 등 의료부조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셋째, 기업 퇴직자의 관리서비스업무가 향상되었다. 넷째, 노인복지·교육·문화·체육 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노인의 존경(尊老), 부양(養老), 및 돌봄(助老)의 전통 미덕을 계승·발양하였다. 다섯째,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인의 정신·문화생활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여섯째, 지방 노령사업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노령사업도 효과적으로 전개되었다. 일곱째, 노령사업 영역의 국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노령사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종합적으로 “국가 노령사업 발전 10.5 계획 요강”은 “10.5 계획 요강”을 통해 노령사업을 국가의 주요사업으로 책정하여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2. “11.5 계획” 기간(2006-2010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대응

“11.5 계획 요강”은 1978년부터 추진된 개혁 및 개방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경제 발전전략의 전환을 이전보다 더 구체화시켰던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11.5 계획 요강”은 중국 정부가 과거의 5개년 ‘계획’에서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해 정부의 직접적 경제개입보다도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추구할 의지를 보였다. “11.5 계획 요강”은 총 14개 편, 4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0.5 계획 요강”(총 26장)보다 무려 22장이 더 증가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복잡해지고 계획 내용이 보다 더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1.5 계획 요강”에서 인구고령화가 처음으로 독립된 절의 제목으로 등장했다. 제10편 38장의 ‘전면적 인구사업 실시’에서는 인구 저출산 수준 안정(1절), 출생인구 소질·구조 개선(2절), 인구고령화 적극적 대응(3절), 부녀자·아동 권익보장(4절), 및 장애인 권익보장(5절)이라는 5개의 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제3절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모든 노인이 양로(요양)받을 수 있고 즐겁고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노인산업을 발전시키고, 전 사회의 양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돌봄 프로그램 실시 등 양로서비스나 의료부조, 그리고 가정(재가) 침상 등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

할 것을 명시했다(國務院, 2006b). 인구고령화를 독립된 절에서 다루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11.5 계획 요강”의 발표 이후, 인구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중국 노령사업 발전 11.5 계획 요강”(中国老龄产业发展“十一五”规划, 2006-2010년), 민정부(民政部)⁸⁾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⁹⁾에서는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2006-2010년)을 발표했다. 먼저 국무원에서는 2006년 8월 16일 “중국 노령사업 발전 11.5 계획 요강”을 발표했다. 이것은 2001년 7월 22일에 발표된 “중국 노령사업발전 10.5 계획 요강”보다 더 구체화된 노인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 노령사업 발전 11.5 계획 요강”의 실시 이후, 중국의 노령사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체적인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國務院, 2006a).

첫째, 양로보장체계의 개선이다. 구체적으로는 양로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기

8) 이는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 산하 중앙정부의 부서로 사회행정사무를 주관하며, 사회보장, 재해구제,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 농촌 오보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9) 이는 국무원을 구성하는 한 위원회이며, 그 전신은 중화인민공화국 계획경제위원회(計劃經濟委員會)로 경제와 사회발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경제체제개혁 등에 대한 거시적 조정을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아울러 국무원 규정에 의거 국가양식국(國家糧食局), 국가연초전매국(國家烟草專賣局)을 관리 감독함.

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 또 기업 퇴직자의 양로급여가 5년 동안 꾸준히 향상되었으며, 기본양로보험의 성급(省級) 통합기금이 실시되었다. 역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

둘째, 근로자와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가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실시되었고,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가입률이 향상되었다. 셋째, 노인복지와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고, 도시와 농촌에서 계획출산 가정의 양로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넷째, 노인 서비스체계를 확립시켜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확대·실시되었고, 양로서비스기구 및 노인활동시설 설립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노인의 교육, 문화, 체육 등의 관련사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노인의 정신, 문화생활이 더욱 풍부해졌다. 여섯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향상과 전통 미덕(尊老, 养老, 助老)의 발양 등으로 노인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일곱째, 노령 영역의 과학적 연구, 국제 교류·협작에 있어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다. 여덟째,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고, 경제·사회건설과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설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국가 노령사업 발전 11.5 계획 요강”은 노령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해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음으로 민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3일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은 향후 5년간 중

국의 빈부격차 해소와 조화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은 총 16개 장, 51개 절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제8장은 노인복지서비스, 고아양육, 장애인복지서비스, 복지복권 발행 권리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며, 인구고령화보다는 사회서비스체계 구축에서 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民政部, 2006). 이것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기보다는 빈부격차의 해소 및 조화사회 실현을 위한 노인, 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실시하며,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3. “12.5 계획” 기간(2011-2015년):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재위: 2003. 3. - 2013. 3.)의 집권 말기부터 2012년 대권을 계승했던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주석(재위: 2013. 3. - 현재) 시기의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된 “12.5 계획”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포용성 성장이란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 및 개방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및 지역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계층이나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거둔 경제발전의 성과를 전 국민이 함께 향유토록 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12.5 계획 요강”은 총 16개 편, 6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11.5 계획 요강”보다 14장이

늘어난 것이다(國務院, 2011a). 곧 중국 경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복잡해지고 계획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5 계획 요강”에서도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절의 제목으로 등장했다. 제8편 36장은 ‘전면적 인구사업 실시’라는 제목 하에서 ‘계획출산서비스 강화(1절), 부녀자 전면적 발전 촉진(2절), 아동의 우선 발전 보장(3절), 적극적인 인구고령화 대응(4절), 장애인사업 발전 가속화(5절)’의 5개의 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제4절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國務院, 2011a). 특히 제36장 4절에서는 재가를 기초로 한, 지역사회에 의탁한. 그리고 거주시설을 보완한 양로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사회보장제도 정비, 건강관리 서비스, 개호 서비스 및 노인인구 활동 등에 집중하여 정책을 제시했다. 이때부터 인구고령화에 관한 중앙정부의 기본정책·계획과 지방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12.5 계획 요강”의 발표 이후, 인구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을 맞이하여 국무원에서는 “중국 노령사업 발전 12.5 계획 요강”(中国老龄产业发展十二五规划, 2011-2015년), 국무원 사무처에서는 “사회양로서비스체계 구축 계획”(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规划, 2011-2015년), 그리고 민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민정사업 발전 12.5 계획”(民政事业發展十二個五年规划, 2011-2015년)을 발표했다. 먼저 국무원에서는 2011년 9월 17일 “중국 노령사업 발전 12.5 계획 요강”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억 7,800명(13.3%)에서 2억 2,100만 명(16%)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노령산업을 국가의 지원 산업으로 지정하고, 노인 소득보장·서비스제도를 강화하고, 또 노령산업정책을 보완할 계획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國務院, 2011b).

첫째, 중국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 양로체계 구축과 실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했다. 둘째, 양로시설이나 노인 병원, 노인주택, 실버서비스 미흡에 대비한 일련의 발전정책을 제정했다. 셋째, 재정투입·사회자금조달을 확대해 부양, 요양, 및 의료형 양로시설 건설을 추진했다. 넷째, 노인용품, 보조기구 및 서비스 상품을 개발했다. 또 “중국 노령사업 발전 12.5계획 요강”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양로체계 구축, 양로산업 촉진과 노인용품 및 서비스 시장 자율화 및 감독기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국무원 사무처에서는 2011년 12월 26일 “사회양로서비스체계 구축 계획(2011-2015년)”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전에 발표된 “중국 노령사업 발전 12.5 계획 요강”과 더불어 12.5 계획 기간의 양로서비스산업 발전의 로드맵이다. 이는 역시 인구고령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구고령화 수준과 경제·사회발전수준에 적합한 사회양로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2015년까지 사회양로서비스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노인 1,000명 당 30장 양로 침상을 확보할 계획 및 재가·지역사회 양로서비스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완비할 계획을 세웠다(國務院, 2011c).

마지막으로 민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

〈표 1〉 “12.5 계획 요강” 기간 국가 노령사업 발전과 노령체제 구축의 주요 지표

구분	완성현황 (a)	예상목표 (b)	a/b (%)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수 (억명)	3.54	3.57	99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수 (억명)	5.05	4.5	112
기업 퇴직자 사회화 관리 비율 (%)	81.1	80	101
퇴사·퇴직자 양로보험 대우 연평균 증가율 (%)	10.7	7	152
농촌오보공양 평균 기준 연평균 증가율 (%)	15.3	7	219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 (억명)	13.3	13.2	101
천명당 노인이 소유한 양로 침상 수 (장)	30.3	30	101
기층 노인법률지원 적용범위 (%)	98	75	131
전국노령사업위원회 사무처에서 실행한 도농 지역사회 건설율 (%)	81.9	87.5	94
노인 교육 참여율 (%)	3.5	5	70
노인 자원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	10	10	100

출처: 國務院 (2016).

회에서는 2011년 12월 20일 “민정사업 발전 12.5 계획”을 발표했는데, 총 6개 장, 28개 절로 구성되었다. 그 중 제2장 3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복지복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다(民政部, 2011). 이는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과 유사하게 주로 사회서비스체계를 확립했는데, 노인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선을 끄는 대목은 “12.5계획” 이후 중국 정부가 노령사업 발전의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또 2017년 2월 국무원에서는 “13.5 국가 노령사업 발전과 양로체제 구축 계획”의 발표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령사업 발전과 노령체제 구축과 관련된 주요 지표의 완성 현황, 예상목표 및 목표달성 비율을 발표했다(<표 1> 참고).

4. “12.5 계획” 기간(2016-2020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연계적 대응

2016년 3월 1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13.5 계획 요강”을 심의·통과시켰다. “13.5 계획 요강”은 “전면적 샤오강사회 건설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5개의 실현 목표(중고속 성장 유지, 민생 향상, 국민 소양과 사회문명의 함양, 생태환경의 총체적 개선,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가 제시되었으며, 실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5개의 발전이념[혁신(創新), 균형(協調), 녹색, 개방, 공동향유(共享)]도 제시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13.5 계획 요강” 기간을 ‘두 개 백년’ 목표 중 첫 목표인 ‘전면적 샤오강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시기라고 강조했고, 자신의 예정된 임기(2013-2023) 내

에 해당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강사회’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면적’이라는 용어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누적된 지역적, 계층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国家行政学院编写组编, 2015). 즉 ‘전면적 샤오강사회’는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져 지역 및 구성원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중산층이 두터워진 안정된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13.5 계획 요강”은 이전의 5개년 계획과는 달리 인구정책과 경제·사회정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인구고령화 문제를 인구전략, 가족계획정책, 양로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사회참여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3.5 계획 요강”은 모두 20개편, 8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12.5 계획 요강”보다 18장이 더 늘어난 것이다(國務院, 2016).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3.5 계획 요강”에서는 처음으로 ‘적극적 인구고령화 대응(제65장)’이 절에서 장으로 승급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인구 균형발전 촉진(1절)과 양로서비스 체계 완비(2절)’가 포함되어 있다. 1절은 인구정책(두 자녀 정책)과 경제·사회정책 간의 연계를 강조한 것이라면, 제2절은 노인층을 위한 양로·의료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먼저 1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예방이나 감소를 위해 출산정책(計劃生育政策)을 조정하려는 시도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26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후 2016년 6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다. 가족계획의 기본 정책을 견지하면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기타 경제·사회정책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에 따른 사회적 부양체계와 복지대책 대비를 염두하고서 펼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절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면적 샤오강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와 부합된다. 특히 양로서비스의 다원화·통합화를 통해 양로지원의 강화,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양로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재가를 기초로 하고 지역사회에 의탁하며 거주시설로 보완하는’ 다층화된 양로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위생과 양로서비스의 연계를 추진하며, 공익성 양로서비스시설을 통합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양로 인원 육성계획을 실시해 양로서비스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인력 규모를 확충하며, 또 양로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다양한 사회주체의 양로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13.5 계획 요강”이 발표된 후,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민정사업 발전 13.5 계획(民政事業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 2016-2020년)” 그리고 국무원에서는 “국가 인구발전 계획”(國家人口發展規劃, 2016-2030년)과 “13.5 국가 노령사업 발전과 양로체계 구

축 계획”(十三五國家老齡事業發展和養老體系建設規劃, 2016-2020년)을 발표했다. 먼저 민 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4일 “민정사업 발전 13.5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다층적 양로서비스 시스템 마련과 사회 주체의 참여 유도를 제시한 것이다. “민정사업발전 13.5 계획”은 총 7개 장, 39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민정사업발전 12.5 계획”과는 달리 양로서비스 영역이 절(제2장 3절)에서 독립된 장(제3장)으로 발전했다.

제3장은 ‘양로서비스 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재가·지역사회 양로서비스 추진(1절), 양로시설 건설 강화(2절), 의료·양로서비스 간의 연계 촉진(3절), 양로서비스 투·융자시스템 혁신(4절), 장기요양보장체계 구축 모색(5절) 등 다섯 가지 방향의 조치를 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民政部, 2011), ① 양로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스마트 양로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부의 양로시설 연계 등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양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 ② 양로시설 건설의 확대 측면에서 보장성 공립양로기관 설치, 양로·의료 결합형 양로기관 설치 등 양로서비스의 공급측 개혁을 확대하는 것, ③ 양로·의료 연계 촉진 측면에서 의료위생과 양로서비스를 결합하는 정책법규 수립과 필요한 자원을 공유하는 것, ④ 투·융자 시스템 혁신 측면에서 정부의 양로서비스 조달을 촉진하고, 양로분야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여 금융의 양로서비스 지원능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⑤ 장기요양의 개념, 서비스 제공기준, 서비스수준 평가 등에 대한 산업규범을 정립

하고,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빈곤이나 고령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시범시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무원에서는 2016년 12월 30일 향후 15년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국가 인구발전 계획(2016- 2030년)”을 발표했다. “국가 인구발전 계획”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장기 전략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고, 향후 인구 및 출산 관련 정책·사업의 근거가 되며, 경제·사회발전의 거시적 정책결정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효과를 발휘하여 출생인구 수준을 제고하는 등 인구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인구의 합리적 분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國務院, 2017). 이는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인구·경제발전의 상호작용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무원에서는 2017년 2월 28일 “13.5 국가 노령사업 발전 및 양로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명칭 변화다. 기존의 “중국 노령사업 발전 12.5 계획 요강”에서 “13.5 국가 노령사업 발전과 양로체계 구축 계획”으로 변경되었는데, 양로체계 구축을 새롭게 포함시킨 점이 그 핵심이다. 인구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양로보험의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생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등 노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양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이효진, 2017). 주요 내용에는 사회보장제도 개선, 양로서비스시스템 완비, 건강 지원시스템 강화, 소비시장 발전, 주

거환경 조성, 문화생활 장려, 사회참여 확대, 노인 권익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도시주민·근로자들의 양로보험 가입률을 90%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률을 95%까지 끌어올리며, 다양한 양로서비스와 건강지원, 사회참여 등 구체적 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했

다(國務院, 2017). 또 실버사업에 대한 법제화, 정보화, 규범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현재는 중국의 실버산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추후 상당한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는 “10.5 계획 요강” 기간부터 “13.5

<표 2> “10.5 계획 요강”부터 “13.5계획 요강”까지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 비교

구분	문서	평가
“10.5계획 요강” (2001~2005년)	“10.5 계획 요강” 제18장 적극적 취업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수립	기타 사회보장사업 발전(제18장 3절)에서 ‘인구고령화 추세를 중시하면서 가정에서의 양로를 독려한다.’고 한 문장으로 표현.
	“중국 노령사업 발전 10.5 계획”	노령사업을 국가 주요 사업으로 책정하며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11.5 계획 요강” (2006~2010년)	“11.5 계획 요강” 제38장 전면적 인구사업 실시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절(제38장 3절)로 발전.
	“중국 노령사업 발전 11.5 계획”	노령사업을 더욱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	빈부격차 해소와 조화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12.5계획 요강” (2011~2015년)	“12.5 계획 요강” 제36장 전면적 인구사업 실시	적극적 인구고령화 대응(제36장 4절)의 설명이 자세해지고 구체화.
	“중국 노령사업 발전 12.5 계획”	인구고령화와 관련해 전반적 양로체계 구축, 양로산업 촉진과 노인용품 및 서비스 시장 자율화 및 감독기능을 제시.
	“사회양로서비스체계 구축 계획”	인구고령화 수준과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양로서비스체계를 구축.
	“민정사업 발전 12.5 계획”	사회서비스체계를 확립하는데 노인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
“13.5계획 요강” (2016~2020년)	“13.5 계획 요강” 제65장 적극적 인구고령화 대응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장(제65장)으로 발전되고 처음으로 인구정책과 경제·사회정책 간의 연계를 강조.
	“민정사업 발전 13.5 계획”	다층적 양로서비스 시스템 마련과 사회 주체의 참여 유도.
	“국가 인구발전 계획” (2016~2030년)	인구-경제발전의 상호작용 향상.
	“13.5 국가 노령사업 발전과 양로체계 구축 계획”	양로보험의 제도적 보완,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생활 참여 지원, 사회적인 인식 개선.

출처: 國務院 (2001a, 2001b, 2006a, 2006b, 2011a, 2011b, 2011c, 2016, 2017a, 2017b), 民政部 (2006, 2011, 2016), 문익준 (2016).

규획 요강” 기간까지 발표된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5개년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중국 노령사업 발전 10.5 계획”은 “10.5계획 요강” 기간부터, “민정사업 발전 11.5 계획”은 “11.5 계획 요강” 기간부터, “사회양로서비스체계 구축 계획”은 “12.5 계획 요강” 기간부터, 그리고 “국가 인구발전 계획”은 “13.5 계획 요강” 기간부터 도입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고령화 대비 실행방안이 실시되어 왔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 또 구체적인 정책 차원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13.5 계획 요강”이 끝나는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을 해야 하는 시기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더욱 거세게 다가올 인구고령화의 역풍에 철저히 대비해 계획대로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이 가능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IV. 맺음말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노인인구 증가 등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저축 하락, 개인의 노후대비 저축증가, 소비나 투자 위축, 노인층 노동공급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인구고령화 영향은 연금·의료보험 등 복지제도, 자본시장제도, 노동시장제도, 고용제도, 주택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과 결부되어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 재정수지의 악화 등 파급효과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의 속도나 규모가 매우 커서 정부차원에서 대비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구고령화 대응정책은 현실에 대한 처방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인구고령화는 장래의 일이지만 제도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정 효과는

참고문헌

- 김병철 (편저) (2016).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차이나하우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13.5 계획” 기간 중국의 공향(共享)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브리핑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2016년 10월 26일, Vol. 19 No. 14. ISSN 2093-341X).
- 문익준 (2016).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성장 간의 관계: 한국과의 비교. **중소연구**, 40(2), 7-45.
- 이효진 (2017). **중국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CSF(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2017-46.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国家行政学院编写组编 (2015). **“全面建成小康社会与中国梦”学习参考**. 国家行政学院出版社.

- 國務院 (2001a).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
- 國務院 (2001b). 国务院关于印发中国老龄事业发展“十五”规划綱要的通知.
- 國務院 (2006a). 关于印发“中国老龄事业发展‘十一·五’规划”的通知.
- 國務院 (2006b).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计划纲要.
- 國務院 (2011a).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计划纲要.
- 國務院 (2011b). 国务院关于印发中国老龄事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 國務院 (2011c).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社会养老服务体系规划建设规划(2011-2015年)的通知.
- 國務院 (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计划纲要.
- 國務院 (2017a). 国务院关于印发國家人口發展規劃(2016-2030)的通知.
- 國務院 (2017b). 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国家老龄事业发展和养老体系建设规划的通知.
- 民政部 (2006).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关于印发“民政事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的通知.
- 民政部 (201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关于印发“民政事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通知.
- 民政部 (2016).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关于印发“民政事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通知.
- 新华社 (2016). 经李克强总理签批,国务院日前印发“国家人口发展规划(2016-2030年)”. 北京1月25日电.
- 田雪原 (2014). 人口老龄化与养老保险体制创新. 人口学刊, 2014年第1期.
- 韩鹏 (2015). 新时期我国人口老龄化问题. 经济管理出版社.
- 원고접수일: 2017. 04. 07.
수정원고접수일: 2017. 05. 10.
원고게재승인일: 2017. 05. 26.